



청탁금지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대상 확대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폐수 무단방류



소비자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공익신고 기관

- 1 국민권익위원회
- 2 관할 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 3 수사기관
- 4 공사 등 공공단체
- 5 기업의 대표자
- 6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인 터 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안산문화재단 행동강령책임관

‘재단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

→ **기획홍보부장**

2018 달라진 청탁금지법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축의금·조의금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처럼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변경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 3만원 기존과 같음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10만원	▶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
 **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

2018 달라진 청탁금지법

부친상을 당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을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조의금 5만원 + 화환 5만원
조의금 3만원 + 화환 7만원



조의금 7만원 + 화환 3만원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